

11. 도시계획시설(공원,수도) 결정 및 변경결정(안) 의견청취 결 과 보 고 서

2003 . 9 . 19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9월 1일 ·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9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(2003. 9. 19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 연 수)

가. 제안이유

○ 우리 구 관내 삼청동 산2-1 도시계획시설(공원,수도)결정 및 변경결정(안)을 열람공고하고

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클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
회 의건을 청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,수도)결정 및 변경결정(안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수 도		종로구 삼청동 산2-1	0	(중) 1,000	1,000	-	수도용지는 지하로 근린공원과 중복결 정(수도-배수지: 지하1,000m ²)
변경	공 원	근린공원 (삼청)	종로구 삼청동 산2-16 일대	378,440	-	378,440	'40.3.12	

3. 質疑 및 答辯 要旨

(질의자 : 심 재 환 위원)

(답변자 : 도시관리국장 김 연 수)

문)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(안)을 2대 일간지에 공고하였다고 하는데 해당지역에는 공고를 하였습니
까?답) 동사무소에 계첩을 하였는데 지역이 산림지대다 보니 주민들의 관심이 조금은 부족하였던 것 같습
니다. 앞으로 관할지역 의원님과 주민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4. 意見採擇：없음

5. 其他 必要한 事項：없음